

2022년 제8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중구 중산동 1873-19번지 [숙박시설,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2. 9. 16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				
	지 번	1873-19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1,70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중심상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101.23㎡	건폐율	64.75%	층수 지하 : 6층 / 지상 : 27층
	주 용 도	근생, 숙박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107.4m	용적률	997.01%	연면적 합계 24,339.4530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 ○ 구조계산서는 신청건축물의 구조설계 근거자료이므로 착공 전 다음 내용을 구조계산서 일반사항에 추가하기 바람. - 성능기반설계 수행사유 및 수행결과(제진댐퍼 필요여부 포함) - 풍동실험결과 반영여부 ○ 구조안전 명기할 것 ○ 내진용 철근 사용은 리스트에 필요부분 명기하여 시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것 - “전이부재 주근”에 내진용 철근 사용하라고 노트에 명기되어 있으나, 전이부재에 해당하는 일람표에 내진용 철근 사용하도록 명기할 것 ○ 전이보 배관간섭부에 대한 조치대안을 도면화 할 것 (실제 배관 간섭부를 도면에 표기하여 입상배관처리가 가능한 부재와 불가능한 부재를 파악하여 최종 시공가능한 도면화 할 것) ○ 성능기반 내진설계보고서의 보강된 벽체 배근이 구조도면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. 27F WE1 수평철근 보완할 것. SW5, SW6 벽체명 확인할 것			
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 ○ 1.4 시공단계에서 지하층 벽체, 슬라브 치기 전에 strut10,9,8단을 해체하므로 strut 해체 시 발생하는 토압을 그 위치까지 시공된 건축 벽체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을 것. (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설계보완이 필요할 수 있는 주요사항으로 안정검토 선행 요망)				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 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2년 제8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중구 운서동 3085-1번지 [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2. 9. 16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유승종합건설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				
	지 번	3085-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17,656.8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 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2,331.5871㎡	건폐율	13.21%	층수 지하 : -2층 / 지상 : 20층
	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4동
	최고높이	58.9m	용적률	149.68%	연면적 합계 42,636.5696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 ○ 앵키 강선 제거 후 공극발생과 함께 지하수 유출에 대비한 사전 현장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요망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